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병준

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오영탁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10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4일

3. 제안이유

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유아 숲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(안 제3조)

나.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

다. 유아숲체험원의 조성·운영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
(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)

라. 유아 숲 교육 심의를 위한 충청북도유아숲교육지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)

마. 유아 숲 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2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본 조례는 유아 숲 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체계적인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타 시·도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강원('15), 전남·경남·부산('17)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임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안 제3조는 체계적인 유아 숲 교육을 위한 도지사의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시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4조는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, 추진 방향, 기반 구축 방안 등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5조는 규모 5천㎡ 이상의 도내 수목원, 자연휴양림 등을 유아 숲체험원으로 조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- 안 제6조는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, 연구 사업 등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충청북도유아숲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, 유아 숲 교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,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'18. 9. 21.~'18. 9. 27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「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유아 숲 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체계적인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